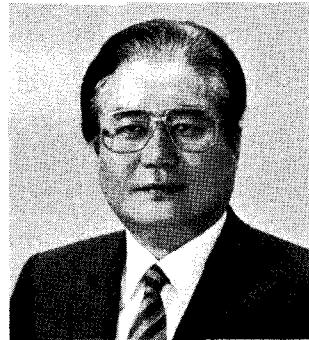


발명의 창출과 지적소유권



김관형
<본회 연수부장>

I. 발명의 창출

1. 발명의 정의

(1) 일반개념 : 전에 없던 것을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내는 일을 말한다.

(2) 공업소유권법상의 개념

① 협의 :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말한다.(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② 광의 : 새로운 창작인 발명(특허)과 고안(실용신안, 의장)을 말한다.

2. 발명창출의 뜻

아이디어의 발상과 신기술의 개발을 말한다.

3. 발명의 자세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하여 유연한 “생각”으로 꾸준한 “집념”을 갖는다.

4. 발명창출의 접근방법

많은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접근”을 하고, 그 소재중에서 “과재를 선택”하여 분석하며, 항상 “요약메모”하는 습성을 길러 과제를 메모하며, “기능별로 정리”해서 “과제를 확정”한다.(① 창의성

② 실용성 ③ 경제성 확인)

5. 창의력을 보강해주는 방법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과 “명상”에 잠기거나 잠재의식에 의한 “꿈”을 꾼다던가 “그룹별로 토의”하는 방법과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6. 발명의 착안점

「필요한 것」을 개발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불편한 것」을 개량하여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발명하며, 「경제적인 것」을 개발하여 값싸고 원가가 저렴한 것을 발명하는 한편 「품질 좋은 것」을 개발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견고한 것을 발명 한다.

7. 발명의 사고방법

(1) 수직적 사고 :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 하려는 사고방법이다.

(2) 수평적 사고 : 사고의 중심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유연하고 함축성” 있는 사고 방법이다.

(3) 입체적 사고 : 수직적 사고

와 수평적 사고를 결합한 한정적 사고로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사고방법이다.(김관형 제창)

8. 발명의 창출법

(1) 단계별 발명

1단계로 문제를 인식하고, 2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며, 3단계로 발명의 가능성을 시험한 후, 4단계로 시작품을 제작 한다.

(2) 우연한 발명

우연하게 행운을 발견하여 발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9. 발명에서 피해야 할 유의사항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착상과
- 시대에 역행되는 것이나
- 공지된 아이디어라든가
- 자기 혼자서만 만족하는 발명은 피해야 한다.

10. 발명의 금언

-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 의문은 가깝고 쉬운 것부터 해결하며
- 항상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한다.
- 그리고 기존의 상품을 다른 곳에 이용해보며
- 용기와

자신을 가져야 한다.

II. 지적소유권 제도

1. 개요

(1)의의 :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무체재산으로서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지적소유권 제도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2)구분

• 지적소유권

저작권 : 예술적·인문과학적 창작을 보호받는 권리(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등)

공업소유권 : 기술적·미적창작과 선정 등록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 기타 정신적 창작에 대한 권리(반도체침보호권, 영업비밀보호권 등)

2. 저작권 제도

(1)의의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2)보호대상 : 어문저작물(소설 등),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등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저작물(번역·편곡 등), 편집저작물 등이 있다.

(3)저작권의 효력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저작인접권은 20년간)이다.

(4)저작권 : ①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②재산권 : 복제권, 공연

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이 있다.

3. 공업소유권 제도

(1)특허제도

①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②특허의 요건 : • 산업상 이용성 • 신규성 •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발명의 종류 :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장치의 발명이 있다.

④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 출원공고일부터 15년이며,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2)실용신안 제도

①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다.(물건을 개량한 발명임)

②등록요건 : 특허의 경우와 같다.

③대상 : 형상·구조의 조합으로서 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이다.

④존속기간 : 실용신안출원공고일부터 10년이며,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3)의장 제도

①정의 :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②등록요건 :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 •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국기·국장 등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존속기간 : 의장출원등록일부터 8년이며,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4)상표제도

①정의 :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표지를 말하며, 기호·문자·도형·이들의 결합체로 구성된다.

②종류 : • 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다.

③등록요건 : 상품의 보통명칭·품질·효능표시나 지리적명칭 등의 표시와 국기·국장·국가명등과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

④존속기간 : 상표출원등록일부터 10년이다. 그러나 10년간 식 갱신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배타권을 갖는다.

III. 맺는말

우리는 지금 대망의 90년대 새章을 여는 길목에서 지적소유권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착상과 우수한 신기술을 더욱 창출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발명과 기술집약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술을 혁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기법과 지적소유권 제도를 익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허 인재를 양성해서 고급인력을 확보하며 기술투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제 산·학·연·발명가 모두가 힘을 합쳐 發明富國을 이루는데 진력해야 하겠다.(♣)